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선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629 발의연월일: 2025. 4. 7.

발 의 자: 백선희·서왕진·김재원

정춘생 · 신장식 · 이해민

황운하・차규근・허 영

김선민 • 박은정 • 윤준병

이소영 · 이춘석 의원

(14인)

제안이유

현행 법령에 따라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는 국토교 통부장관 소속으로 하고, 상임위원 2인은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과 철도국장이 겸하고 있음.

그런데 항공·철도 사고조사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위원회의 지무가 항공·철도 관계 당국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고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되어야 함에도, 현행 위원회는 국토교통부 등으로부터통제 및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임. 참고로 지난 12·29여객기참사의 원인 중 하나로 무안공항의 로컬라이저 콘크리트 둔덕 설치와조류충돌 대비 등에 관한 국토교통부의 부실 관리 문제가 불거지면서 '셀프조사' 논란으로 인해 국토교통부 전·현직 인사가 위원회에서 배제된 바 있음.

이에 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기구로 격상하고 국토교통부의 개입을 차단함으로써 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요건을 신설하여 공정성을 강화하는 한편, 회의록 작성 등을 의무화하 여 이를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등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하되, 위원회는 사고조사와 사고조사보고서의 작성·의결 및 공표, 권고 등 그 권 한에 속하는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함(안 제4조제1항 및 제2항).
- 나.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위원 1인은 상임위원으로 함(안 제6조제1항).
- 다. 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임위원인 위원을 포함한 4인의 위원은 위원장이 제청하여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나머지 4인의 위원은 국회에서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함(안 제6조제2항).
- 라.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하며,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안 제6조제3항 및 제4항).
- 마. 위원은 항공·철도·과학기술·공공안전·법률 등 사고조사에 이 바지할 수 있는 관련 분야 인사가 고루 포함되도록 하고, 이해충돌 여지가 있는 기존의 자격요건은 삭제함(안 제7조).
- 바. 위원의 결격사유에 항공사업자등 및 철도사업자등에 근무하고 있

거나 퇴직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와 최근 3년 이내에 연구개발과제 등 총 1천만원 이상의 용역을 수탁하여 수행하고 있 거나 수행하였던 자를 추가함(안 제8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

- 사. 상임위원은 공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도록 하며, 위원장은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함(안 제11조의2).
- 아.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안건에 관하여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등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항을 신설함(안 제11조의 3제1항부터 제4항까지).
- 자. 위원회 회의록을 속기의 방법으로 작성하여 보존하도록 하고, 회 의록을 공개하도록 함(안 제12조의2).
- 카. 항공사고등 및 철도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의 유가족 단체가 추천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는 위원장의 허 가를 받아 위원회 회의를 방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의3제1항).
- 타. 위원회 소관 사무의 실무적 자문이나 심의・의결 사항에 관한 사전검토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문위원 제도를 폐지하고 전문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14조).
- 파. 위원회의 안전권고를 개선권고로 변경하고, 권고를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권고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권고사항의 이행계획을 위원회에 통지하도록 하는 등 위원회 권고의 실효성을 제고함

(안 제26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법률 제 호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운영원칙)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독립성 및 공정성을 유지하며, 항공사고 및 철도사고 등의 원인규명과 예방에 필요한 대 책을 마련하고 이행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조제1항제7호 중 "안전권고"를 "개선권고"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8. "항공사업자등"이란 항공운송사업자, 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와 그 장비품의 제조·개조·정비 및 판매사업자, 그 밖의 항공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기관·법인·단체를 말한다.
- 9. "철도사업자등"이란 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 철도차량을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 철도건설관련 시공업자 또는 철도용품·장비 판매사업자, 그 밖의 철도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기관·법인·단체를 말한다.

제4조제1항 중 "독립적으로 수행하기"를 "수행하기"로, "국토교통부에"

- 를 "국무총리 소속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제5조제3호 중 "안전권고"를 "개선권고"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12인 이내의"를 "9인의"로, "위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의 위원은 상임으로"를 "위원장 및 위원 1인은 상임위원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장 및 상임위원은"을 "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로, "임명하며"를 "임명하고"로, "비상임위원은 국토교통부장관이"를 "상임위원인 위원을 포함한 4인의 위원은 위원장이 제청하여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나머지 4인의 위원은 국회에서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 또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 ④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 그 밖의 위원회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이 될 수 있는 자는"을 "위원은"으로, "철도관련 전문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를 "철도 분야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항공·철도·과학기술·공공안전·법률 등 사고조사에 이바지할 수 있는 관련 분야 인사가 고루 포함되어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를 삭제한다.

제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 외의 부분)에 제3호의2 및 제4호의2부터 제4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의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4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4의3. 탄핵결정에 따라 파면된 자
 - 4의4.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당원
 - 5.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항공사업자등에 근무하고 있거나 퇴직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6.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철도사업자등에 근무하고 있거나 퇴직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7. 제2조제1항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항공사업자등 및 철도사업자등 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연구개발과제 등 총 1천만원 이상의 용 역을 수탁하여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하였던 자
 -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그 직에서 당연 퇴직한다.
 - ③ 위원회는 위원이 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하여 제2조제1항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항 공사업자등 및 철도사업자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 다.

제11조의2·제11조의3·제12조의2 및 제1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1조의2(겸직금지 등) ① 상임위원은 공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 ② 위원장은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
 - ③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조의3(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
 -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 가 되거나 해당 안건에 관하여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진술이나 감정을 한 경우
 - 4.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고 있 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 6. 위원이 속한 법인 등(최근 3년 이내에 속하였던 경우를 포함한다)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또는 용역 등을 수행한 경우② 제척의 원인이 있으면 위원장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의하여 제척의 결정을 한다.
- ③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 ④ 위원이 제1항 또는 제3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대하여 회피할 수 있다.
- 제12조의2(회의록의 작성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속기나 녹음 또는 녹화를 할 수 있다.
 - 1. 회의 일시 및 장소
 - 2. 출석위원
 - 3.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 및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회의록 및 녹음기록의 작성·보존과 관련하여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 제12조의3(회의의 방청 등) ① 항공사고등 및 철도사고로 인하여 사망

한 사람의 유가족 단체가 추천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위원회의 회의를 방청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사고조사에 관련된 자문을 얻기"를 "그 소관 사무의실무적인 자문이나 심의·의결 사항에 관한 사전검토 또는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로, "필요한 경우 항공 및철도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을 "필요하면 위원회 소속으로 전문위원회를 둘"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제2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한다.

제21조의 제목 중 "국토교통부장관의"를 "정부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수행하기"를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수행하기"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사실의 조사 또는 관련 공무원의 파견, 물건의"를 "정부(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은 제외한다)에 물적·인적"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은"을 "정부는"으로, "사고조사의"를 "사고조사에 필요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25조제1항제5호 중 "권고 및 건의사항"을 "권고사항"으로 한다.

제26조의 제목 중 "(안전권고 등)"을 "(개선권고)"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경우에는 항공·철도사고등의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관계기관의 장에게 안전권고 또는 건의할"을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 대하여 개선을 권고할"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관계 기관의"를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관계기관의"로,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안전권고 또는 건의에 대하여 조치계획 및 결과를"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그 권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행결과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권고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권고사항의 이행계획을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그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유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⑤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관계기관의 장이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통보 또는 통지한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제28조를 삭제한다.

제3장에 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연차보고서) ① 위원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해당 회계연도의 위원회 업무수행에 관한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보고서를 공표한다. 다만, 공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1조 중 "자문위원"을 "전문위원회의 위원(이하 "전문위원"이라 한다)"로 한다.

제33조제2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자문위원"을 "전문위원"으로 한다.

제34조제1호 중 "자문위원"을 "전문위원"으로 한다.

제4장에 제34조의2 및 제3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2(청렴의무)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제14조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사고조사와 관련하여 제2조제1항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항공사업자등 및 철도사업자등에 종사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34조의3(벌칙) 제34조의2를 위반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임명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

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은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위원장은 제6조제3 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제3조(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위원이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제8조제1항제3호의2, 제4호의2부터 제4호의4까 지,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제4조(겸직금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공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다른 직무를 겸하고 있는 위원은 제1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 내에서 공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있다.
- 제5조(제척·기피·회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위원이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제11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제척·기피·회피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 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1조의2(운영원칙) 항공ㆍ철도사
	고조사위원회는 독립성 및 공
	정성을 유지하며, 항공사고 및
	철도사고 등의 원인규명과 예
	방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고
	이행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	제2조(정의) ①
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사고조사"란 항공사고등 및	7
철도사고(이하 "항공·철도사	
고등"이라 한다)와 관련된 정	
보ㆍ자료 등의 수집ㆍ분석 및	
원인규명과 항공·철도안전에	
관한 <u>안전권고</u> 등 항공·철도	<u>개선권고</u>
사고등의 예방을 목적으로 제	
4조에 따른 항공・철도사고조	
사위원회가 수행하는 과정 및	
활동을 말한다.	
<u> <신 설></u>	8. "항공사업자등"이란 항공운
	<u>송사업자, 항공기 또는 초경</u>
	량비행장치와 그 장비품의 제
	조・개조・정비 및 판매사업

<신 설>

② (생략)

제4조(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설치) ① 항공·철도사고등의 원인규명과 예방을 위한 사고조사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위하여 국토교통부에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일반적인 행정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를 지휘·감독하되, 사고조사에 대 하여는 관여하지 못한다. 자, 그 밖의 항공사업과 관련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 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기 관·법인·단체를 말한다.

- 9. "철도사업자등"이란 철도운 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 철도차량을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 철도건설관련 시공업자 또는 철도용품·장비판매사업자, 그 밖의 철도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및 관계 기관·법인·단체를 말한다.
- ②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2. (생략)
- 3. 제26조에 따른 안전권고 등 3. -----개선권고---4. ~ 6. (생략)
-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u>위</u> 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의 위원은 상임으로 한다.
 - ② 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대통 령이 임명하며, 비상임위원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한다.

③ 상임위원의 직급에 관하여 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될 수 있는 자는 항공·철도관 ----철도 분야에 관한 식견과

제5조(위원회의 업무) 위원회는 제5조(위원회의 업무) ------

- 1. 2. (현행과 같음)
- 4. ~ 6. (현행과 같음)

-----9인의-----위원장 및 위원 1인은 상임위원으로----.

- ② 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 으로-----임명하고--상임 위원인 위원을 포함한 4인의 위원은 위원장이 제청하여 대 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나 머지 4인의 위원은 국회에서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 또는-_____
- ③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 ④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 그 밖의 위원회의 구성 등에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제7조(위원의 자격요건) 위원이 제7조(위원의 자격요건) 위원은--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1.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 이상 된 자
- 2. 대학에서 항공・철도 또는 안전관리분야 과목을 가르치 는 부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 3. 행정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 | 으로 2년 이상 있었던 자
- 4. 항공·철도 또는 의료 분야 전문기관에서 10년 이상 근무 한 박사학위 소지자
- 5.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을 취득 하여 항공운송사업체에서 10 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임명・위촉일 3년 이 전에 항공운송사업체에서 퇴 직한 자
- 6. 철도시설 또는 철도운영관련 업무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 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임명

련 전문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임 명하거나 위촉하되, 항공ㆍ철도 · 과학기술 · 공공안전 · 법률 등 사고조사에 이바지할 수 있 는 관련 분야 인사가 고루 포 함되어야----.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 위촉일 3년 이전에 퇴직한 자
- 7. 국가기관등항공기 또는 군 · | <삭 제> 경찰 · 세관용 항공기와 관련 된 항공업무에 10년 이상 종 사한 경력이 있는 자

제8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제8조(위원의 결격사유) ①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는 위원이 될 수 없다.

1. ~ 3. (생략) <신 설>

4. (생략) <신 설>

<신 설>

5. 항공운송사업자, 항공기 또

1. ~ 3. (현행과 같음)

3의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 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현행과 같음)

4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 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 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의3. 탄핵결정에 따라 파면된 자

4의4. 「정당법」 제22조에 따 른 당원

5.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항

는 초경량비행장치와 그 장비 공사업자등에 근무하고 있거 품의 제조ㆍ개조ㆍ정비 및 판 매사업 그 밖에 항공관련 사 업을 운영하는 자 또는 그 임 직원

6. 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 자, 철도차량을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 철도건설 관련 시공업자 또는 철도용품 ·장비 판매사업자 그 밖의 철도관련 사업을 운영하는 자 및 그 임직원

<신 설>

<신 설>

<신 설>

나 퇴직한 날부터 3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

6.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철 도사업자등에 근무하고 있거 나 퇴직한 날부터 3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

- 7. 제2조제1항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항공사업자등 및 철도사 업자등으로부터 최근 3년 이 내에 연구개발과제 등 총 1천 만원 이상의 용역을 수탁하여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하였던 자
-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그 직에서 당연 퇴직한다.
- ③ 위원회는 위원이 제1항제5 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른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하여 제2조제1항제8호 및 제

<신 설>

<신 설>

9호에 따른 항공사업자등 및 철도사업자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경우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1조의2(겸직금지 등) ① 상임의원은 공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 ② 위원장은 정치활동에 관여 할 수 없다.
- ③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조의3(위원의 제척·기피· 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그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
 -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 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 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안 건에 관하여 공동권리자 또 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 우

-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경우
-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진술이나 감정을 한 경우
- 4.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대상이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 6. 위원이 속한 법인 등(최근 3
 년 이내에 속하였던 경우를
 포함한다)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또는 용역
 등을 수행한 경우
- ② 제척의 원인이 있으면 위원 장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척의 결정을 한다.
- ③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 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신청 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 로 이를 결정한다.

<신 설>

<신 설>

④ 위원이 제1항 또는 제3항의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대하여 회피할 수 있다.

제12조의2(회의록의 작성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 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 면 속기나 녹음 또는 녹화를 할 수 있다.

- 1. 회의 일시 및 장소
- 2. 출석위원
- 3.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 록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 및 개인의 사 생활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 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회의록 및 녹음기록의 작성 ·보존과 관련하여 그 밖의 필 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 제12조의3(회의의 방청 등) ① 항 공사고등 및 철도사고로 인하 여 사망한 사람의 유가족 단체

제14조(자문위원) 위원회는 사고 제14조(자문위원) ① ------그 조사에 관련된 자문을 얻기 위 하여 필요한 경우 항공 및 철 도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위원으 로 위촉할 수 있다.

<신 설>

- 제17조(항공·철도사고등의 발생 통보) ① (생 략)
 - ② 제1항에 따른 항공·철도종 사자와 관계인의 범위, 통보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통보시기, 통보방법 및 절차 등은 국토교 통부령으로 정한다.

<u>가</u>	추천	한	자료	르서	대통	등령	렁	<u>0</u>
로	정ㅎ	는	요긴	<u></u> 일을	갖칕	<u>z</u>	자	는
위	원장의	의 ह	허가들	를 별	받아	위	원	회
의	회의	를 '	방청	할 4	 는 있	다.		
<u>(2)</u>	위원	· 장(<u> </u>	 실서 [를 유	가지	하	フ]
	하여							
	' ' 퇴장							

소관 사무의 실무적인 자문이 나 심의 · 의결 사항에 관한 사 전검토 또는 위원회로부터 위 임받은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 행하기-----필요하면 위원 회 소속으로 전문위원회를 둘-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제17조(항공·철도사고등의 발생 통보) ① (현행과 같음)

2			
			 <u>총리</u>
령 9	으로	.	

③ (생략) 제21조(국토교통부장관의 지원) ① 위원회는 사고조사를 수행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 게 사실의 조사 또는 관련 공 무원의 파견, 물건의 지원 등 사고조사에 필요한 지원을 요 청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고조사의 지원 을 요청받은 때에는 사고조사 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실의 조사를 지 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 로 하여금 제19조제1항 각 호 의 사항을 조치하게 할 수 있 다. 이 경우 제19조제4항의 규 정을 준용한다.

등) ① 위원회는 사고조사를 종결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고조사보고서

③ (현행과 같음)
제21조(<u>정부의</u> 지원) ①
<u>독립적이고 공정</u>
<u>하게 수행하기</u>
<u>정</u> 부(국
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은 제
<u>외한다)에 물적·인적</u>
② <u>정부는</u>
<u>사고조사에 필요한</u>
· <삭 제>
<u>×1 ×1 </u>

제25조(사고조사보고서의 작성 제25조(사고조사보고서의 작성 등) ① -----

를 작성하여야 한다.

- 1. ~ 4. (생략)
- 5. 제26조에 따른 <u>권고 및 건의</u> <u>사항</u>
- ② (생략)
- 제26조(안전권고 등) ① 위원회는 제29조제2항에 따른 조사 및 연구활동 결과 필요하다고 인 정되는 경우와 사고조사과정 중 또는 사고조사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항공 ·철도사고등의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안전권고 또는 건의할 수 있다. ② 관계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안전권고 또는 건의에 대하여 조치계획 및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② (현행과 같음) 제26조 <u>(개선권고)</u> ①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

대하여 개선을 권고할----

- - ③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권고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권고사 항의 이행계획을 위원회에 통 지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신 설>

제28조(정보의 공개금지) ① 위원 회는 사고조사 과정에서 얻은 정보가 공개됨으로써 해당 또 는 장래의 정확한 사고조사에 영향을 줄 수 있거나, 국가의 안전보장 및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공・철도사고등과 관계된 사람의 이름을 공개하 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개하지 아

 니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관계기관의 장은 그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유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관계기관의 장이 제2항부터제4항까지에 따라 통보 또는통지한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삭 제>

제29조의2(연차보고서) ① 위원회 는 매 회계연도 종료일 이후 3 개월 이내에 해당 회계연도의 제31조(비밀누설의 금지) 위원회 기의 위원·자문위원 또는 사무국 직원, 그 직에 있었던 자 및 위원회에 파견되거나 위원회의 위촉에 의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33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생략)
 - ② 위원회는 <u>국토교통부령으로</u>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출 석하여 발언하는 위원장·위원 ·<u>자문위원</u> 및 관계인에 대하 여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4조(벌칙적용에서의 공무원 제34조(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의제)

위원회 업무수행에 관한 보고
서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보고서를
공표한다. 다만, 공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상당한 이유
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
결로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1조(비밀누설의 금지)
전문위원회의 위원(이
하 "전문위원"이라 한다)
제33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현
행과 같음)
② <u>총리령으로</u>
<u>전문</u>
위원
제34조(벌칙적용에서의 공무원

에 해당하는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자는 「형법」 제129조부 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 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위원회의 위원, <u>자문위원</u>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분야별 관계 전문가

2. · 3. (생 략)

<신 설>

	·
1	<u>전문위원</u>

2. · 3. (현행과 같음)

제34조의2(청렴의무)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제14조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사고조사와 관련하여 제2조제1항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항공사업자등 및 철도사업자등에 종사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34조의3(벌칙) 제34조의2를 위 반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에 처한다.